8.6 발포 작업 후 안전조치사항

- (1) 우레탄폼 표면 등과 10m 이내에서 화기작업을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방화덮개 또는 방염포로 표면을 차단하거나 화재감시인을 배치하여야 한다.
- (2) 발포된 우레탄폼은 용접 또는 용단 중인 고열물 등과 접촉되지 않도록 조치하고, 우레탄폼을 벽체 및 천장 내장재로 마감할 경우에는 폼 표면 위에 12mm 이상의 석고보드 또는 그와 동등한 성능을 갖는 불연재를 사용하여 내부를 점화원으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.
- (3) 이소시아네이트 및 폴리올을 혼합 발포한 후 혼합헤더 내부의 경화 방지를 위하여 메틸렌클로라이드(Methylene chloride) 등과 같은 인화성물질을 사용하여 청소하는 경우에는 인화성이 높은 유증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변의 점화원을 제거하여야 한다.





<그림 14> 메틸렌클로라이드와 폴리올

(4) 가연성 물질인 우레탄폼이 적재 또는 시공되어 있는 장소에서 용접 등의화기작업을 할 경우 KOSHA GUIDE P-94-2012(안전작업허가 지침)에 따라 화기작업허가서 발행 등 사전 안전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.

8.7 우레탄 원액 여분처리 안전조치사항

(1) 사용하고 남은 이소시아네이트와 시스템폴리올을 밀폐용기에 넣고 서로 혼합할 경우 반응에 의한 압력이 발생하여 용기가 파열 또는 폭발할 수 있으므로 분리하여 잔여분을 처리하여야 한다. 폐액이 담겨있는 폐액 밀폐용기는 파열 또는 폭발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압력이 상승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